

고성군울대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3. 3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취지

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비하여 유입량이 적어 폐수처리단가의 상승 및 폐수의 장기체류로 인한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 지역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기존 농공단지내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하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자(장)의 범위에 유성산업(주)을 포함시킴(안 제2조 제2호)
- 나. 고성울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범위에 고성읍 울대리 농공단지외 유성산업(주)를 추가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수질환경보전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
- 나.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
- 다. 울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(낙동강환경관리청, 2000.1.17)
- 라. 입법예고 : 불필요

4. 본문 : 붙임참조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울대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울대농공단지공동오·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업자(장)라 함은 농공단지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(장) 및 고성읍 울대리 226번지내 위치한 유성산업(주)를 말한다.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처리구역)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고성울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사업자(장)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(장)를 말한다.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</u></p> <p>3. ~ 8. (생략)</p> <p>제5조(처리구역) <u>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”에 의거 고성군 관내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사업자(장)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(장) 및 고성읍 울대리 226번지내 위치한 유성산업(주)를 말한다.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</u></p> <p>3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처리구역) <u>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고성읍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지역으로 한다.</u></p>